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62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744호)	황운하의원	2025.6.12.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827호)	한민수의원	2025.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14호)	이재관의원	2025.8.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577호)	조인철의원	2025.9.1..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14호)	김우영의원	2025.10.15.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19.)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
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

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신 설></u>	<u>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u> <u>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u> <u>용의 정보</u>
<u><신 설></u>	<u>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u> <u>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u> <u>「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u> <u>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u> <u>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u> <u>정보</u>
<u><신 설></u>	<u>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u> <u>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u> <u>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u> <u>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u> <u>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u> <u>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u> <u>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u> <u>내용의 정보</u>
<u><신 설></u>	<u>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u> <u>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u> <u>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u>
<u><신 설></u>	<u>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u> <u>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u> <u>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u> <u>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u><신 설></u>	<u>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u> <u>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u>

<u><신 설></u> ⑤ ~ ⑦ (생 략)	<u>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9.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⑤ ~ ⑦ (현행과 같음)
--	--